주간근무스케줄표

주차	2026-09-21	← 월요일 날짜. 시간은 09:00 형식(자정을 넘기면 02:00 그대로 입력 가능). 휴게는 분 단위.

연번	성명	월			화			수			목			금			토			일			주 근무시간	15h 이상	1일 8h 초과	주 40h 초과
		출근	퇴근	휴게	출근	퇴근	휴게	출근	퇴근	휴게	출근	퇴근	휴게	출근	퇴근	휴게	출근	퇴근	휴게	출근	퇴근	휴게				
1																										
2																										
3																										
4																										
5																										
6																										
7																										
8																										
9																										
10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주 근무시간 = 요일별 (퇴근−출근) − 휴게(분)을 합산합니다. 자정을 넘기는 근무는 02:00처럼 그대로 입력해도 계산됩니다(26:00 입력도 가능).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.
※ "15h 이상"은 참고 표시입니다. 주휴일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와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세요(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·제55조, 시행령 제30조).
※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·1주 40시간입니다(제50조). "1일 8h 초과"는 8시간을 넘긴 날 수, "주 40h 초과"는 주 합계 기준 표시입니다.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이며 가산수당 대상입니다(제53조·제56조).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·제53조·제56조가 적용되지 않지만, 휴게와 주휴일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(시행령 별표1).
※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에게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,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까지이며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합니다(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).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(같은 법 제3조, 시행령 [별표 1]).
※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·1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고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·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(제69조). 22:00~06:00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(제70조 제2항). 표의 "1일 8h 초과"·"주 40h 초과"는 18세 미만 기준이 아닙니다.